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198호)	오기형의원	2024.8.26.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②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8379호)	이해식의원	2025.2.24.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③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8798호)	이병진의원	2025.3.11.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④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154호)	박성준의원	2025.4.28.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122호)	황운하의원	2025.8.12.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239호)	전현희의원	2025.8.19.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699호)	전용기의원	2025.9.4.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5.9.23.)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5.9.24.)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죄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다.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라.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5항).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고발”을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기한 종료 위원회 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특별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찰총장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검사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